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62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강승규 · 박상웅 · 김미애
백종헌 · 고동진 · 박충권
이철규 · 김소희 · 김위상
유용원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2. 인증·암호화 등 통신보안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
3.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주기
4. 원격접속 통제, 접근권한 제한 및 특정 국가의 원격관리 차단 등 보안 조치
5.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기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보안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u> <u>2. 인증·암호화 등 통신보안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u> <u>3.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주기</u> <u>4. 원격접속 통제, 접근권한 제한 및 특정 국가의 원격관리 차단 등 보안 조치</u> <u>5.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전기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안기준에 적합하</u>

	<u>도록 유지하여야 한다.</u>
--	---------------------